

긴급 입찰공고 사유서

□ 용역 개요

- 용역명 : 전통의약 국제 심포지엄 개최 대행 용역
- 사업예산 : 115,000,000원(금일억일천오백만원, VAT 포함)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4년 11월 28일까지

□ 근거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3-49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3항, 제37조제1항, 제50조제1항, 제52조제1항, 제55조제1항,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1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제3항 등에 따라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입찰·계약보증금 인하 등 한시적 특례가 적용되는 기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례 적용기간) 영 제27조제3항, 제37조제1항, 제50조제1항, 제52조제1항, 제55조제1항, 제58조제1항에 따른 특례 적용기간은 이 규정을 고시한 날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정은 2024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추진사유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에서 긴급입찰에 관련하여 "'24.6.30.까지 모든 경쟁입찰은 시행령 제35조제4항 1의2호 국가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긴급입찰로 발주 가능"에 따라, '전통의약 국제 심포지엄 개최 대행 용역'을 긴급 발주하여 계약체결기간을 단축하고자 합니다.
- 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5항 제1호(또는 제35조 제5항 제4호)에 따라 본 사업의 긴급 입찰공고를 요청함.